

선 람	기 관 의 장



제39호(호외) 2021. 10. 5.(화)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835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광양시 조례 제183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
광양시 조례 제1837호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광양시 조례 제1838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광양시 조례 제1839호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광양시 조례 제1840호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45
광양시 조례 제1841호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광양시 조례 제1842호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59
광양시 조례 제1843호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63
광양시 조례 제1844호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광양시 조례 제1845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광양시 조례 제1846호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광양시 조례 제1847호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74
광양시 조례 제1848호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광양시 조례 제1849호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9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17호 광양시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85
광양시 규정 제418호 광양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폐지규정	114
광양시 규정 제419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규정 폐지규정	115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조례 제1835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재산관리관”을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3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 중 “70을 감액한다”를 “100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u> <u>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u> <u>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u> <u>산의 사용목적·용도·위치가</u> <u>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나 토</u> <u>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u> <u>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u> <u>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u> <u>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u> <u>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하</u> <u>다.</u> 6.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u> <u>재산관리관---</u>
5. <u>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u> <u>정하는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u>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u> <u>제23호</u> 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u>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u> <u>제24호</u> ----- ----- -----

같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4.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 ⑤ (생략)
-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

3. 4.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

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신 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
액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
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100을 감
액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u>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u>	<u><삭 제></u>
<u>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연 4회 분납</u>	<u><삭 제></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광양시 조례 제183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 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광양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국장 및 주소정보·도로·교통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조례 제1837호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지능정보통합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 경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않은 경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u>	<u>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u>지역정보화</u>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능정보화</u> ----- ----- 「지능정보화기본법」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 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5.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5. (현행과 같음)
제3조(<u>지역정보화</u> 시책의 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지역정보화</u>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제3조(<u>지능정보화</u> 시책의 기본원칙) ----- <u>지능정보화</u> -----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 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능정보화 -----

제2장 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삭 제>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광양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전라남도 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제6조(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 설치·

운영)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
정보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정보화 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

<삭 제>

<삭 제>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② 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 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제3장 지역정보화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사항제3장 지능정보화 추진

제10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 ① -----

지능정보화-----.
- ② ---- 지능정보화-----

-----.
- ③ ----- 지능정보화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 ②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
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화
책임관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정보 관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
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생략)

-----.

제12조(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능정보화책임관
----- 지능
정보화책임관-----

-----.

④ -----
-----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통합센터-----
-----.

제13조(전산정보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은 경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략)

제21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위탁)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안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않은-----

-----.

광양시 조례 제1838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5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제4조”로, “진흥시키고”를 “권장·보호·육성을 통해”로, “확대하기 위하여”를 “확대하고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진흥을 위해”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야영장 시설 등

제5조제2항 중 “10명”을 “6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과”를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본문 중 “수탁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양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u>진흥</u> 시키고 문화 향유 기회를 <u>확대</u> 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5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제4조--- 권장·보호·육성을 통해 --- 확대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u>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진흥을 위해</u> -----.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제1호부터 <u>제4호</u>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3조(시설) ----- -----. 1. ~ 4. (현행과 같음) 5. <u>야영장 시설 등</u> 6. ----- <u>제5호</u> ----- ----- -----
제5조(진흥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서로 뽑으며, 예술촌 업무담당 <u>국장</u> 과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	제5조(진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6명 이상 9명</u> ----- ----. ③ ----- ----- ----- <u>국장</u> , ----- -----

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관리위탁) ① ~ ⑥ (생략)

⑦ 예술촌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제6조(관리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원칙적으로 수탁자-----
--. -----
-----.

⑧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 조례 제1839호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을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을 “생활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을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법인이나”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로 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를 “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서로 뽑는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당연직 : 광양시 체육회상임부회장, 광양시 생활체육회장”을 “광양시체육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장의 제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을 “학교체육 진흥”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교체육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앞에 “제7장 체육단체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체육회 및 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20조(사전협의)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광양시체육회, 광양시장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체육회 등은 인력채용 등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를 “체육회 등에”로 하며, “검사하계”를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체육”이란 <u>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u>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 ----- <u>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체육지도자”란 <u>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u>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u>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u>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 ---- <u>생활체육</u>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체육단체”란 <u>체육에 관한 활</u>	8. ----- 법 제2조제9호 각

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
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
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
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
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생 략)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양시의 체육진
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단서 신설>

1. 당연직 : 광양시 체육회상임
부회장, 광양시 생활체육회장,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 -----

----- 법인
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
츠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법 제5조-----

-----.

제5조(구성) ① ----- 의장을 포
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

② ----- 시장-----
-----선출한다.

③ -----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
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광양시체육회장-----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광양시 업무담당국장,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광양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체육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

제6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광양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부단장·주무 각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경기부 부대표 및 운영 지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장 학교체육 진흥

제17조(학교체육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3. 주무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각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제18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광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
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
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
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부를 해체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
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매년 수립하는 직
장경기부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
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기
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
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
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
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21조(준용) 경기부의 위탁관리

제7장 체육단체 지원 등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광양시체육회 및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
비

제20조(사전협의)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광양시체육회,
광양시장래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체육회 등은 인력채용 등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삭 제>

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4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25조 ~ 제27조 (생략)

제23조(보고·검사) ①시장은 체육회 등에 -----

-----검사
하는 등 지도·감독을-----.

② 시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 26조(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광양시 조례 제1840호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수립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전라남도지사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

을 제9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시민의 요청이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시장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대한 시민의 영향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영향조사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은 즉시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고지 및 정보의 공개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양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4장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광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안전업무 담당국장

나. 광양소방서·광양경찰서·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연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책임자

다.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사.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적성·보존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의 준용) 위원회 운영, 실비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 제2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41호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시장의 책무”를 삭제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시장의 책무”를 삽입한다.

제4조 중 “보전 할 사명을 가지고”를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자연의 복구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 감량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7.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8.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환경감시 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장 시장의 책무</u>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음진동 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u><신설></u> 제4조(기본적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삭제></u> 제3조(정의) ----- ----- -----. 1. ~ 5. (현행과 같음) 6.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u>제2장 시장의 책무</u> 제4조(기본적 책무) ----- ----- ----- -----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1.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자연의 복구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의2(사업비 지원)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생략)

②시장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

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 감량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7.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8.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제4조의2(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환경감시 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22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

③-----
----- 「소음·진동관리
법 시행규칙」 제20조 -----
-----.

광양시 조례 제1842호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거치대 설치) ①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43호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대학”이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와 기관을 말한다.

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대학병원 등 부속기관 중 시에 소재하는 기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지방대학”이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와 기관을 말한다. 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대학병원 등 부속기관 중 시에 소재하는 기관

광양시 조례 제1844호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1호”로, 같은 호 및 제5호 전단 중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을 각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 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발 우 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 ----- ----- ----- ----- -----.
1. <u>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u>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 는 재학생	1. <u>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u> <u>경기도 소재</u> ----- -----
2. <u>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u> <u>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u> <u>학생</u>	2. <삭제>
3. <u>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u> <u>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u> <u>는 재학생</u>	3. <삭제>
4. <u>제1호, 제2호, 제3호</u> 외의 지 방 소재 대학생이 <u>서울특별시</u> <u>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u> 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취업과 관련하여 6 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 야 할 경우	4. <u>제1호</u> ----- -- <u>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u> <u>경기도 소재</u> ----- ----- ----- ----- -----

5.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이 경우 제1항 본문의 주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5.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 조례 제1845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출연법””을 ““지방출자출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법”을 “지방출자출연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출연법”을 “지방출자출연법”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법”을 “지방출자출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출연법”을 “지방출자출연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7 조제2항 및 <u>출연법</u> 제8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정관) ① ----- ----- ----- ----- “지방출자 출연법”----- -----. ② ----- ----- ----- <u>지방출자출연법</u> ----- -----.
제11조(예산 보고) 재단은 회계연 도마다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예 산을 <u>출연법</u> 제18조제2항에 따 라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해 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예산 보고) ----- ----- -- <u>지방출자출연법</u> ----- ----- ----- --.
제12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 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를 <u>출연 법</u>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 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제12조(결산서 제출) ----- ----- <u>지방출 자출연법</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	제14조(재정지원) ① -----

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에
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
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
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출연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
도·감독 또는 확인·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
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② (생략)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
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② -----
--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 ① ----- 지방출
자출연법-----

-----.

-----.

-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 조례 제1846호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동 1747-1”을 “중동로 108”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12조제1항 관련)”을 “(제11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12조제2항 관련)”을 “(제1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일 전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등) ① (생략) ② 센터는 광양시 <u>중동 1747-1</u> 에 둔다. ③ (생략)	제2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중동로 108</u>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 (제13조 관련)	[별표 3] 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반환금액</th></tr> <tr> <td>-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td><td>납부한 이용료 전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일 전</td><td>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일 이후</td><td>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과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td></tr> </table>	구분	반환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전	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과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반환금액</th></tr> <tr> <td>-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td><td>납부한 이용료 전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일 전</td><td>납부한 이용료 전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일 이후</td><td>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td></tr> </table>	구분	반환금액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전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구분	반환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전	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과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구분	반환금액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전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 전액에서 반환 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광양시 조례 제1847호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광양사랑상품권”이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입학 축하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입학 축하금 환수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자택)		
	주민등록 주소지			
	아동과의 관계			
입학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학교명	학교	입학일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광양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확인사항	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확인 ☐ 3) 광양사랑상품권 발급사항 확인 ☐			
확인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 **[유의사항]** 허위자료 제출 등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광양시 조례 제1848호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3 학생의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증 등) 취득 후 비용 지원
9. 농산어촌유학 운영 사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비의 용도)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비의 용도)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고3 학생의 국가공인자격증</u> <u>(운전면허증 등) 취득 후 비용</u> <u>지원</u>
<u><신설></u>	9. <u>농산어촌유학 운영 사업 지</u> <u>원</u>
8. (생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광양시 조례 제1849호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
10.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별표 1의 제3호나목에 따른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1”을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별표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제1항에 따라 관할의 도시숲 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 ----- ----- ----- ----- ----- ----- -----.
<u>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u>	<u>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u>
<u>2.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u>	<u>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u>
<u>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u>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u>
<u>4.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u>
<u>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u>	<u>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u>
<u>6.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u>	<u>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u>

현행	개정안
<u>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u> <u>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u> <u>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u> ② · ③ (생략)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③ (생략)	<u>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u> <u>8.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u> <u>9.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u> <u>10.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 ----- -----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장</u> ----- ----- ----- -----.
제11조(기능별 관리)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별 관리) -----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
제13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 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 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 재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제6조제4항 별표 1의 제6호 가목에 따른 지역은 가로수 식 재를 제한한다.	제13조(식재위치) ----- ----- ----- ----- ----- -----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별표 1의 제3호나목에 따른 지 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광양시 규정 제417호

광양시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 제44조 및 시행요강”을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 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감독 업무
8. 정보통신보안 업무

9.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담당관실·과·소장, 읍·면·동장을 분임 보안담당관”을 “실·국·소장, 읍·면·동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소관업무와 소속 부서 내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 제68조 및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실 국 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무팀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 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 촬영, 복사판의 관리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비밀취급인가 사무)”를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밀취급인가”를 “인원보안에 관한”으로, “취급한다”를 “관장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 시장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Ⅱ급·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

②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각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③ 제2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④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알린다.

⑤ 제2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⑥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⑦ 보안규정 제8조에 의한 인가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Ⅱ급비밀

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서무업무팀장

나. 사업소장, 사업소 서무업무팀장

다. 읍면장, 읍총무과장·면총무팀장

라. 동장, 동총무팀장

마. 기타 총무계획 담당자 등 II급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III급비밀 : III급비밀 취급을 필요로 하는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및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

2. 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직책으로 전보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자

제11조의 제목 “(임시 고용원관리)”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시고용원”을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비밀 심사관) 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심사관은 보안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신청서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문서의 뒷면 표지 안쪽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유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년 월 일		부 발간		6cm
발간업체명		전화()		
대 표 자				
인가근거				
참여자	소속 성명			

10cm

③ 민간발간업체는 전라남도지사가 인가한 업체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시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⑤ 비밀발간통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보안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보안담당관(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규칙 제40조”를 “보안규칙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지출”을 각각 “안전반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관·과·소”를 “실·과·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안전지출”을 각각 “안전반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출한다”를 “반출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출된”을 “반출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지출”을 “반출”로, “담당관·과·소”를 “실·과·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안전지출”을 각각 “안전반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음어자재의 관리 및 책임)”을 “(암호자재의 관리 및 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음어자재”를 “암호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음어자재”를 “암호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모두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어자재”를 “암호자재”로, “보안자재”를 “암호자재”로, “문건을 혼합보관을”을 “문건의 혼합보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규칙 제50조”를 “보안규칙 제50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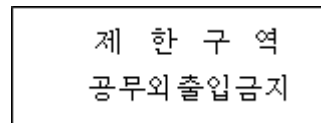
제22조의 제목 “(보호구역 설정)”을 “(보호지역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칙 제42조”를 “보안규칙 제53조”로, “보호구역을 별표과”를 “보호지역을 별표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총무

팀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

1. 제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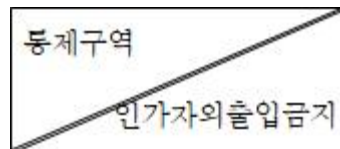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적색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23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운영)”을 “(보호지역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42조에”를 “보안규칙 제54조 및”으로,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23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입

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실시해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자체보호 계획수립)”을 “(자체방호 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보안점검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할”을 “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규칙 제62조”를 “보안규칙 제64조”로, “시행세칙”을 “시행세칙 제46조”로 한다.

제29조 중 “규정, 규칙”을 “보안규정, 보안규칙”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양시 보호지역 현황 (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구역명	관리부서
제한지역 (1)	시청 전 지역	총무과
제한구역 (12)	문서고	총무과
	발간실	총무과
	민방공경보시설	정보통신과
	기계실	회계과
	전기실	회계과
	여권심사실	민원지적과
	지적서고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서고	민원지적과, 읍·면
	통신실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자료실	정보통신과
	재난안전상황실	안전총괄과
	정수장·배수지·수배전반	상수도과
통제구역 (4)	민·관·군 종합상황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환경상황실	환경과
	통합전산실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총괄과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등급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비밀 등급	사 유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조서

소 속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담당업무 (구체적사항)			
비밀취급 인가경력			
신원조사내용			
의 견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보안담당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신청서

년 월 일

발 간 장 소	업 체 및 대 표 자 명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주 소			인 가 근 거		
가 제 목				문 서 비 밀 등 급		
부 수		사정부수		구 분	타자, 프린트 마스터, 인쇄	
기 간	20부터 20까지(. 시간)					
자 체 보 안 대책						
입 회 관	비밀취급 인가등급	급	성명		직급	
배 부 처						

[별지 제4호서식]

비밀(대외비)문서 통제대장

일련 번호	통제일	발신	수신	제 목	비밀 등급	사본 부수	형태	입회관	인쇄처	비 고

제 목 또는 가제목	비밀 등급	발간 의뢰 부수	납품 기일	조달 의뢰 일자	원고 수교 일자	프린트 공인 판쇄	의뢰 업체명	입 회 관		
								인가 등급	직명	성명

상기와 같이 비밀문서 조달을 의뢰하고 입회관을 파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수 요 기 관

보안관리자 직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illegible]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u>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동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이라 한다)의</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및 근거) ----- 「 <u>보안업무규정</u> 」, 「 <u>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u> 」 및 「 <u>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u> 」 ----- ----- -----.
제3조(보안담당관) 시 전반적인 보안유지 관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 <u>규정 제44조 및 시행요강 제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이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3조(보안담당관) ----- ----- 「 <u>보안업무규정</u> 」(이하 “ <u>보안규정</u> ” 이라 한다) 제43조 및 「 <u>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u> 」(이하 “ <u>시행세칙</u> ” 이라 한다) ---.
제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u>규칙 제66조에</u> 의해 다음 각호와 같다. 1. <u>자체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u> 2. <u>보안교육</u> 3. <u>비밀소유현황 조사</u> 4. <u>서약의 집행</u>	제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u> 2. <u>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u> 3. <u>보안교육</u>

<u>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u> 제5조(분임보안담당관) ① 업무 기능별 보안대책을 위하여 <u>담당 관실·과·소장, 읍·면·동장</u> 을 분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 관의 업무중 당해 실·과·사업 소·읍·면·동 업무에 대한 계 획, 조정,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	<u>4. 비밀소유현황 조사</u> <u>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 황 조사</u> <u>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의 서약 관련 업무</u> <u>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 비 관리·감독 업무</u> <u>8. 정보통신보안 업무</u> <u>9.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 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u> 제5조(분임보안담당관) ① ----- ----- 실·국· 소장, 읍·면·동장을 분임보 안담당관-----.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 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소관 업무와 소속 부서 내에서 「보 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 제68 조 및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 한다. 제6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으며 그 직에 임명과 동시에 당
연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위 원 : 실 국 장
4. 간 사 : 서무팀장

제8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
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
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
항(임명, 비밀취급인가등)
5. 공무원(신원특이자) 해외여
행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
6. 중요시설 경계대책
7.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 도서, 시공업체, 사후관
리등 보안조치 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
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8. 항공사진 촬영, 복사판 관리
9. 도시계획도 및 행정지도 발

---.

1. · 2. (현행과 같음)
3. ----- 국 · 소장
4. ----- 총무과장

제8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
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 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
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 촬영, 복사판의 관
리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
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u>간 배포 관리</u> <u>10.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u> <u>② 각 위원과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u> 제9조(<u>비밀취급인가 사무</u>) 시행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u>비밀취급인가</u> 사무는 총무과에서 총괄 <u>취급한다.</u> 제10조(<u>비밀취급인가 범위</u>) ① <u>비밀취급인가 및 해제는 시행세칙 11조를 준용하며 규정 제8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u> <u>1. Ⅱ급비밀</u> <u>가. 시장, 부시장 및 국장, 실·과장</u> <u>나. 사업소장, 사업소 서무업무담당주사</u>	<u>보안업무 수행사항</u> <u>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u> <u>11.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u> <u>②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u> 제9조(<u>인원보안 업무의 취급</u>) --- ----- <u>인원보안에 관한</u> ----- <u>관장한다.</u> 제10조(<u>비밀·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해제</u>) ① <u>시장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Ⅱ급·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u> <u>②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각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u>
---	---

다. 본청 서무업무팀장
라. 읍면장, 읍총무과장·면
총무팀장

마. 동장, 총무팀장(이하 주
무 라 한다)

바. 기타 총무계획 담당자등
Ⅱ급 비밀취급인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2. Ⅲ급 비밀

Ⅲ급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및 인가
권자를 달리하는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

2. 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직책
으로 전보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
안사고를 범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는 문서로써 발령
하고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는 별도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

③ 제2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
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
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
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조서
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
한다.

④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
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
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알린
다.

⑤ 제2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
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암호
자재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⑥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
다.

⑦ 보안규정 제8조에 의한 인가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
다.

1. Ⅱ급비밀

으로 본다.

제11조(임시 고용원관리) 임시고
용원의 관리는 시행세칙 제21조
의 규정에 준용하며, 보안상 책
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되

가.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서무업무팀장

나. 사업소장, 사업소 서무업

무팀장

다. 읍면장, 읍총무과장·면

총무팀장

라. 동장, 동총무팀장

마. 기타 총무계획 담당자 등

Ⅱ급 비밀취급인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2. Ⅲ급비밀 : Ⅲ급비밀 취급을

필요로 하는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및 인가

권자를 달리하는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

2. 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직책

으로 전보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

안사고를 범한 자

제11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

리)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며,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비밀 통제관) 규정 제27조 및 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문서통제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청 : 서무업무팀장
2. 사업소 : 서무업무팀장
3. 읍·면 : 총무팀장
4. 동 : 총무팀장

제14조(비밀문서 발간통제) 비밀을 생산 발간코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부 발간시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거쳐 분임보안담당관의 지도 감독 담당자 책임 회하에 발간토록 한다.
2. 외부 발간시는 규정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원본과 비밀문서 발간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발간승인을 비밀문

-----.

제13조(비밀 심사관) 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심사관은 보안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제14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신청서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문서의 뒷면 표지 안쪽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유지하고 별지 제5

서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규정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 조
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

급 비 밀 발 간 송 인			
업 체 명			
부 수		인가근거	
통 제 관		통제일시	

3. 비밀의 외부발간시는 도지사가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통제한다.

가. 발간업체의 적합성

나.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
성

다.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
성

라.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
합성

제17조(보관책임자) ① 규정 제20
조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를 보
관 단위별로 정·부 책임자 각
1인을 두며 다음과 같이 정한
다.

1. (생 략)

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
인서를 발부한다.

년 월 일		부 발간
발간업체명 전화()		
대 표 자		
인가근거		
참여자	소속 성명	

10cm

③ 민간발간업체는 전라남도지
사가 인가한 업체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시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정부비밀문서 발
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
다.

⑤ 비밀발간통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제17조(보관책임자) ① 보안규정

-----.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 : 정 - 분임보안담당관(사업소장)

3. · 4. (생략)

② (생략)

제1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규칙 제40조에 의한 안전지출 및 파기는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당직반장 및 당직사령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지출 및 파기는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서는 근무시간중에는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정상근무시간외에는 당직실에 비치한다.

④ · ⑤ (생략)

⑥ 보안담당관과 당직반장 및 당직사령은 각 담당관·과·소의 비밀보관 책임자의 등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열쇠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각

2. ----- 사업소장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보안규칙 제49-- 안전반출 --

--. -----

-----.

② 안전반출 -----

--.

③ 안전반출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실·과·소-----

실·과·소 비밀을 지정된 장소
로 집결시킬 수 있다.

⑦ 각종 사태별 안전지출 및 파
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시 안전지출

가. 보안담당관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밀문
건의 이송절차를 각 실·과
·소 보관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나. 각 실·과·소 보관책임
자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목록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지출한다.

다. 보안담당관은 각 실·과
·소로부터 지출된 비밀문
건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송한다.

라. (생략)

2. 비상사태시 파기

가. · 나. (생략)

다. 각 실·과·소로부터 지
정된 장소까지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급박할
때에는 각 담당관·과·소
보관책임자 책임하에 즉석

-----.

⑦ ----- 안전반출 -----
-----.

1. ----- 안전반출

가. ----- 안전반출 --

-----.

나. -----

----- 반출한
다.

다. -----
----- 반출된 -----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반출 -----

- 실·과·소 -----

에서 파기하고 파기한 비밀 문건의 목록만을 보안담당 관에게 제출한다.	----- -----.
3. 화재 또는 천재지변 발생시 <u>안전지출</u> 가. (생략) 나. <u>안전지출</u>의 절차 및 요령 은 비상사태시의 절차에 준 한다.	3. ----- <u>안전반출</u> 가. (현행과 같음) 나. <u>안전반출</u>----- -----.
제20조(<u>음어자재</u>의 관리 및 책임) ① <u>음어자재</u> 취급의 정책임자와 부책임자 각 1인을 두며, 정책임 자는 정보통신과장, 부책임자는 통신팀장으로 한다. ② <u>음어자재</u>는 정보통신과에서 보 관 관리하고 <u>음어자재</u>점검부에 의 거 주1회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매 월 보안진단의 날에 보안담당관 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③ <u>음어자재</u>는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 보관하고 과거 용과 미래용은 밀봉하여 보관한 다. ④ <u>음어자재</u>보관함에는 <u>보안자재</u> 이외의 <u>문건을 혼합보관</u>을 금한다.	제20조(<u>암호자재</u>의 관리 및 책임) ① <u>암호자재</u> 취급의 정책임자와 부책임자 각 1인을 두며, 정책임 자는 정보통신과장, 부책임자는 통신팀장으로 한다. ② <u>암호자재</u>는 정보통신과에서 보 관 관리하고 <u>암호자재</u> 점검기록부 에 주 1회이상 이상 유무를 점검 하고 매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삭제> ③ <u>암호자재</u>보관함에는 <u>암호자재</u> 이외의 <u>문건의 혼합보관</u>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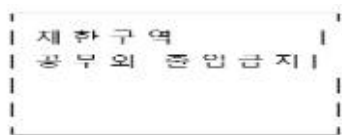
제21조(음어자재의 긴급 파기) 규칙 제50조에 의한 음어자재의 파기는 총무과에 수립 비치된 긴급파기계획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담당관 또는 당직사령이 직접 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구역 설정) ① 규칙 제42조 및 시행세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을 별표과 같이 지정한다.

② 보호구역의 운영관리 책임은 실·과·소는 실·과·소장, 읍면동은 총무팀장에게 있다.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보호구역 표시와 정·부 관리 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 청색테

제21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보안규칙 제7조에 의한 암호자재의 파기는 긴급파기계획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담당관 또는 당직사령이 직접 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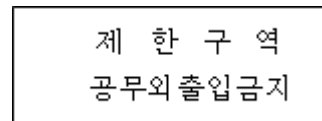
제22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안규칙 제53-----
----- 보호지역을 별표와 -----
-----.

② 보호지역-----

읍면동장-----.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

1. 제한구역



-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 나. 청색테

-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 테 및 대각선은 적색
-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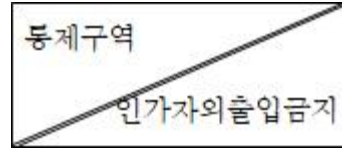
④ (생 략)

제23조(보호구역의 운영) 규칙 제42조에 시행세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한다.

1. ~ 3. (생 략)

-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 나. 적색테 및 적색 대각선
-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호지역의 운영) ① 보안 규칙 제54조 및 -----
--- 보호지역-----
-----.

1. ~ 3. (현행과 같음)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제24조(자체보호 계획수립) 시행 세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비 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유지를 위하여 <u>시</u> <u>청 직장예비군 중대장</u>은 자체방 호계획을 별도로 수립 운영한다. 제26조(조사결과 처리) 보안담당 관은 정기 및 불시 <u>보안점검결</u> <u>과</u>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28조(보안사고 보고) ① <u>규칙</u> <u>제62조</u> 및 <u>시행세칙</u>에 규정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 체없이 시장(보안담당관 참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 여지지 않은 사항은 <u>규정</u>, <u>규칙</u> 및 <u>시행세칙</u>의 정하는 바에 따 른다.	<u>기록 유지하여야 한다.</u> ④ <u>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u> <u>포함)</u>은 <u>보호지역에 대한 자체</u> <u>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u> 제24조(자체방호 계획수립) ---- ----- ----- ----- <u>시장</u>----- ----- -----. 제26조(조사결과 처리) ----- ----- <u>보안점검 결과</u> <u>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u> <u>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u> <u>치를 할</u> ---. 제28조(보안사고 보고) ① <u>보안규</u> <u>칙 제64</u>-- <u>시행세칙 제46조</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준용규정) ----- ----- <u>보안규정, 보</u> <u>안규칙</u> -----.
---	---

광양시 규정 제418호

광양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폐지규정

광양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규정 제419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규정 폐지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